

의안번호	2205771
의 퇴 인	김예지의원
회 답 일	2025.2.3.
추계번호	24D5285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고지,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억 4,800만원, 2030년에 2억 3,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1억 9,400만원(연평균 2억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교육 (안 제19조제3항)	88	61	61	88	61	361	72
통지나 통보 등 송달료 (안 제30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40조제2항)	160	163	167	170	173	833	166
합계	248	225	228	258	235	1,194	239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감명령 또는 장애인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9조(장애인학대범죄수사에 필요한 교육)제3항	국가는 장애인학대범죄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인권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21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6항	검사는 피해장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22조(보조인)	피해장애인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등, 장애인권의 옹호기관의 직원,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3조(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	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	의무규정
6	안 제30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제1항,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법원은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집행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30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제6항, 제7항 및 제9항, 제31조(임시조치의 고지),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제2항, 제37조(피해장애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제5항	법원은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고지, 장애인 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등에게 통지, 피해장애인 보호명령 기간 종료 시 통보,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받은 장애인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함	의무규정
8	안 제36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명령)	법원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상담소 상담·치료위탁 등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40조(이행실태의 조사)제2항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받은 장애인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장애인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경우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감명령·이수명령 건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하기 어려움
2	안 제19조(장애인학대범죄수사에 필요한 교육)제3항	○	—
3	안 제21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6항	—	피해장애인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현재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사업에서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성폭력·아동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수당으로 2024년 54억 1,500만 원을 편성
4	안 제22조(보조인)	—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이 보조인을 선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현재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사업에서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성폭력·아동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활동 수당으로 2024년 5억 8,400만원, 진술조력인 배치 7억 7,300만원, 진술조력인 양성 1억 100만 원을 편성
5	안 제23조(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	—	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증인시설의 설치 운영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법원은 범죄피해자인 증인에 대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을 각급 법원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현재 법무부의 ‘재판절차비용지원’사업에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 운영비 등으로 2024년 1억 2,400만원 편성
6	안 제30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제1항, 제32조(임시조치의 집행)	×	법원은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등 임시조치를 하고, 이를 집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건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하기 어려움
7	안 제30조(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제6항, 제7항 및 제9항, 제31조(임시조치의 고지), 제32조	○	—

	(임시조치의 집행)제2항, 제37조(피해장애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제5항		
8	안 제36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명령)	×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등의 피해장애인보호명령 시 피해장애인 보호건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하기 어려움
9	안 제40조(이행실태의 조사)제2항	×	관할 법원이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받은 장애인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장애인학대범죄수사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 교육 실시(안 제19조제3항)

- 제정안은 국가가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교육을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전담검사의 경우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을 통해 법무·검찰공무원등, 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강사료,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2024년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있고, 검찰청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등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조사접근법’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사법경찰관 교육의 경우 경찰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교육으로 매뉴얼 제작, 사이버교육, 시도청 교육강의, 워크숍, 외부위탁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함

[표 2]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교육 소요 예산

		재정소요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자기주도 학습	매뉴얼 학습	15	▶ 매뉴얼 제작 : 1,500만원	▶ 3년에 1회
	사이버교육	12	▶ 사이버교육 제작 : 1,200만원(1시간 기준)	▶ 3년에 1회
기초과정	시도청 교육센터	34	▶ 강사료 : 3,420만원(95만원×2일×18개 센터)	▶ 매년 실시
	워크숍	11	▶ 강사료 : 70만원(35만원×2명) ▶ 진행비 : 300만원 ▶ 식대 : 750만원(25,000원×300명)	▶ 매년 실시
심화과정	외부위탁교육	16	▶ 강사료 : 700만원(140만×5일) ▶ 임대료 : 500만원(100만×5일) ▶ 교재비 : 90만원(3만×30명) ▶ 운영비 : 300만원(10만×30명)	▶ 매년 실시
합 계		88	—	—

자료: 경찰청

[표 3] 장애인 학대 범죄수사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장애인 학대 범죄수사에 필요한 교육 실시	88	61	61	88	61	3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통지나 통보 등에 따른 송달료(안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9항,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40조제2항)

-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고지,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등에게 통지, 피해장애인 보호명령 기간 종료 시 통보,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받은 장애인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에 따른 통지나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법원의 관련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송달료 예산을 유사사례로 참고하여 추계함
 - 제정안에서 정의하는 각 죄명별 장애인학대범죄건수는 별도로 작성·관리되고 있지 않고, 최근 5년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접수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참고로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3,658건,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년 4,957건, 2022년 4,958건, 2023년 5,497건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표 4] 최근 5년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명)

	사건 접수	처분 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20	272	284	8	44	37	137	58
2021	330	346	7	56	61	75	147
2022	440	417	7	56	83	112	159
2023	532	542	7	97	107	109	222
2024	508	500	6	80	129	127	158

주: 1.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보완수사요구

자료: 법무부

-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서 대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송달료 명목으로 2023년 1억 5,000만원²⁾의 예산을 편성한 바, 이와 동일하게 가정하고,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5] 통지나 통보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통지나 통보 등에 따른 송달료	160	163	167	170	173	833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고지,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 상황 통보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2억 4,800만원, 2030년에 2억 3,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1억 9,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장애인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교육	88	61	61	88	61	361
통지나 통보 등 송달료	160	163	167	170	173	833
합계	248	225	228	258	235	1,1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1억 5,000만원 = 긴급응급조치건 예상 송달료 + 잠정조치사건 예상 송달료
 긴급응급조치사건 예상 송달료: 3,869건(2023년 예상 처리건수) × 0.983(인용률) × 1회(검찰 1회) × 4,980원 = 18,940,070원
 잠정조치사건 예상 송달료: 5,621건(23년 예상 처리건수) × 0.936(인용률) × 5회(검찰 1회, 피해자 1회 및 그 법정대리인 1회, 경찰 1회, 스톱킹행위자의 변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스톱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1회) × 4,980원 = 131,005,274원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